

IMF 이후 발생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유 태 군*

이 연구는 IMF 이후의 대량실업 상황에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시도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제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8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에 대한 콕스 비례위험회귀(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대상의 실업탈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정부의 실업대책 이외에도 실업자와 실업가구의 인구, 사회 및 경제적 특성, 이전 직장관련 특성, 그리고 생계유지수단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1. 서론

지난 10여 년간 약 2~3%대의 실업률을 보이면서 거의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해왔던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약 7~8%로 추정되는 높은 실업률을 갖는 선진국형(?) 대량실업사회로 전락했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대량실업이라는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¹⁾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실업대책 또한 필요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하며, 실제로 현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업대책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이를 개선해 왔다. 다만, 그러한 변화과정은 반드시 실업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현행 실업대책이 —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가 — 대량실업 상황하에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대량실업이라는 문제에 얼마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 작업이 병행되어야만 하며, 적어도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더 많은 연구와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보다 효과적으로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업자들이 실업상태로부터 벗어나 재취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나타난 대량실업 상황하에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 즉 실업으로부터 벗어나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향후 실업관련 정책의 변화를 위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찾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정부의 실업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현행 실업대책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나타난 대량실업과 그 밖의 여러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의 적절성을 실증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²⁾

1) 1998년 말부터 차츰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던 경제상황은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근의 잇달은 대기업의 붕괴와 재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유가상승 움직임은 대량실업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더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1997년 말 이래 지속되고 있는 대량실업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인 고용보험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자연발생적 실험의 장(場)을 제공하고 있다.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 결정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하에서의 실업급여나 고용안정 혹은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IMF 이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실증 연구의 부재는 연구의 부재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할 때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실증적인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지난 1997년 말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경제적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의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제도를 수차례에 걸쳐 변화하여 왔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변화의 방향이 수급기간의 장기화, 수급자격의 완화 및 적용범위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가치기준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정책변화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한 실업대책에서의 일련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³⁾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와 같은 대량실업 상황하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제로 실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연 앞으로 더 심각해질지도 모르는 대량실업사태에 얼마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기회와 명분을 제공하는 것과 제공된 기회와 명분을 이용하여 실제로 그러한 점검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기 바란다.

3) 현 정부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제도와 관련된 정책변화를 추진해 온 방식을 보면 아마도 실업관련 대책의 일련의 변화는 정치적인 논리로밖에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항상 정치적인 판단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가 평가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의 가장 주된 목적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발생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부의 실업대책의 실제적인 효과, 즉 실업대책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실업자의 실업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그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의 증가를 계기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외국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로 직장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실업탈피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로서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제시하는 연구와(Classen, 1977; Holen, 1977; Ehrenberg와 Oaxaca, 1976), 실업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제시하는 연구(Feldstein, 1976; Burgess와 Low, 1992, 1998), 그리고 실업급여기간 동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위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Meyer, 1990; Katz와 Meyer, 1990; Poterba와 Summer, 1995; Belzil, 1995).

두번째 부류로는 초기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업급여와 실업탈피간의 관계를 실업탈피 유형, 즉 고용유형별로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바는 실업상태에서 탈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임시직과 같은 불완전한 고용상태로 실업탈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상태로 실업탈피가 이루어지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유형에 따라서 실업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부류에 속하는 연구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용유형과 실업유형을 세분화하여 분리시키는 경우, 실업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ldsworth, 1991; Korpi, 1995; Carling 외, 1996; Ruiz-Quintanilla와 Claes, 1996; McCall, 1977).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 연구들, 즉 실업탈피 유형을 고려한 상태에서 실업급여와 실업탈피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과 동일한 이론적 시각에서 앞서 언급한 연구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즉, <표 1>과 같이 실업탈피

〈표 1〉 고용유형 및 실업유형에 따른 연구대상 분류

실업 탈피자	비실업 탈피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실업자 - 실망실업자

가 이루어진 경우, 일단 탈피유형 혹은 고용유형을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고용유형별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실업대책이 실업탈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비실업탈피자에 대해서도 실업유형을 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와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발생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부의 실업대책의 실제적인 효과, 즉 실업대책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상황에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 (2)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업탈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① 실업급여는 실업탈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직업훈련 참여여부가 실업탈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③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직활동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가 실업탈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이하 콕스 회귀분석)을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였다. 콕스 회귀분석은 생존분석방법(survival analysis method) 가운데 하나로서, 생존기간(survival time)과 생존기간 예측 변수(predictor variable)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서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다.⁴⁾

콕스 회귀분석은 식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험함수(hazard function), $h(t)$ 를 추정함으로써 특정 시점까지 어떤 특정 관찰대상이 생존한 경우, 그 시점에서 단위시간당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을 추정하며, 동시에 독립변수 X 의 계수 B 를 추정함으로써 어떤 독립변수들이 단위시간당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연구의 경우, 위험함수 $h(t)$ 는 관찰대상이 특정 시점까지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그 시점에서 관찰대상의 단위시간당 실업탈피 가능성을 추정하게 되며, B 를 추정함으로써 독립변수들 가운데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콕스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콕스 회귀분석은 반드시 비례위험 가정(proportional hazards assumption)이 만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예측변수들 가운데 시간의존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비례위험 가정이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2)와 같은 시간의존 독립변수-콕스 회귀분석 모형(Cox Regression with Time-dependent covariates)을 사용하였다.⁵⁾

4) 콕스 회귀분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허명희·박미라, 1994, 《SAS와 NCSS를 이용한 생존 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pp. 5/1~6/14를 참조하기 바람.

5) 비례위험 가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허명희·박미라(1994)를 참조하기 바람.

$$(1) h(t) = [h_0(t)] e^{(BX)}$$

$h(t)$ = 위험함수, $h_0(t)$ = 기초선 (*baseline*) 위험함수,

$X = [x_1, x_2, x_3, \dots, x_n]$, $B = [b_1, b_2, b_3, \dots, b_n]$.

$$(2) h(t) = [h_0(t)] e^{(BX \cdot T)}$$

T = 시간 - Covariate, 그 외는 식 (1) 과 동일.

2) 자 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 실시한 '1998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이하 1998 실업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1998 실업실태조사' 자료는 전국의 250개 조사구로부터 약 3만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IMF 이후 발생한 실업자,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및 IMF 이후 전직경험자, 재취업자 등의 개인에 관한 자료와 실업 및 비실업가구, 그리고 조사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⁶⁾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3) 변 수

(1) 종속변수 및 연구대상 선별기준

이 연구에서는 실직탈피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업탈피에 걸린 시간, 즉 실직 이후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을 종속변수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를 보다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동시에 연구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표 2>에 제시된 4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상만을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1998 실업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총 5,357명⁷⁾

6) 가구 단위의 조사에서는 가구의 특성, 가계경제상태, 가족생활 변화, 건강 및 의료이용 상태 및 실업대책 평가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개인을 단위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구직활동/고용상태, 실업 전 상황, 실업대책 평가 및 욕구, 심리적 상태 및 가족복지 및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1998 실업실태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1999, "1998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2〉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분석대상 선정 조건

조 건	설정 근거
실직발생 시기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9월까지의 기간일 것.	종속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IMF 이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 연구에서는 IMF 이후를 1997년 11월 이후, 즉 1997년 12월부터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1997년 12월부터 '1998 실업실태조사'가 실시된 1998년 9월까지 기간동안 발생한 실직에 한하여 실직이 발생한 달로부터 재취업이 이루어진 달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며 1~10개월까지의 변수 값을 취할 수 있다.
1997년 12월 이전에 취업하였고 1997년 11월에는 취업상태에 있었을 것.	IMF 구제금융지원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시기가 1997년 11월말인 바, 199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실업과 이후의 실업은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MF 이후 발생한 실직자의 실직탈피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1997년 12월 이전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개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직사유는 자발적일 것. 실직은, 실직에 앞서 취업할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것.	실업의 성격이 자발적인 경우, 실직에 앞서 취업할 곳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자발적 실직자들이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실직탈피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단축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운데 1,451명을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켰다.

(2)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는 실직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 30개의 독립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독립변수는 '1998 실업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1998 실업실태조사' 자료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30개 독립변수는 〈표 3〉과 같이 크게 가구(家口)와 개인(個人)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시 6가지 하위차원으로 세분화하여 볼 수 있다.

7) 5,357명의 구성은 실업자 3,230명,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350명, IMF 이후 재취업 임금근로자 1,389명 및 IMF 이후 재취업 비임금근로자 388명임.

〈표 3〉 독립변수 및 독립변수의 내용

단 위	범 주	독립변수 및 변수내용
가 구	1.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 수, 65세 이상의 노인 수, 6세 이하의 아동 수, 가구주, 장애인 수, 거주지역
	2. 경제적 특성	주관적으로 판단한 최소생활비, 재산규모(빚 제외), 생활보호 및 한시적 생활보호가구여부
	3. 생계유지수단	근로소득, 소득이전, 저축 및 재산, 빚, 사회적 원조
개 인	1. 고용상태	취업여부, 취업형태
	2. 이전 직장	이전 직장의 직종, 업종, 근무형태, 근무기간, 월평균 급여수준, 퇴직금 수급여부
	3. 실업대책 이용 및 평가	실업급여 수급여부, 직업훈련 참여여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이용한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수

4. 분석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 분석결과

이 연구를 위해 ‘1998 실업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중에 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1998 실업실태조사’ 자료는 실업자와 실업가구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의 무응답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원자료상의 응답범주에 대한 재구성 작업을 통해 무응답 사례를 줄이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과 같은 실업대책관련 문항에 대한 무응답 사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제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사례의 수는 상당히 줄어들었다.⁸⁾

또 다른 문제점은 연속변수 형태의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누락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독립변수의 변수 형태를 불가피하게 연속변수가 아닌 이항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

8) 분석별 실제 사용된 사례수는 분석모형에 따라 다르며 〈표 5〉의 분석결과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는 527~665명으로 낮아졌다. 분석대상의 특성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2) 실업탈피 가능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실업탈피자와 비실업탈피자를 실업 및 실업탈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한 결과, 비실업탈피자의 경우는 분석대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동시에 누락사례가 많지 않아 사용이 가능한 사례의 수가 45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비실업탈피자를 일반실업자와 실망실업자로 분리하는 경우, 의미있는 분석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업유형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실업탈피자의 경우는 고용유형에 따라 정규직 실업탈피자와(n=138) 비정규직 실업탈피자로(n=106)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콕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모든 실업탈피자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콕스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했다.

1차로 콕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30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거주지역'과 '퇴직금 수급여부'는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7개 대도시와 8개 도를 합하여 거주지역을 16개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몇 지역의 표본은 지역별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퇴직금 수급여부는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응답 내용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사례와 무응답 사례 등으로 인하여 분석대상의 크기를 약 15% (665명 기준) 정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역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콕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비례위험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독립변수 가운데 시간의존적(time-dependent)일 가능성이 있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공공근로, 공공직업안정기관 이용수 및 재산규모에 대해서 비례위험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였다. 그 결과, 4개 독립변수 모두 비례위험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시간의존 독립변수 - 콕스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차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총 28개 독립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시간의존 독립변수 - 콕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모형(1), (2) 및(3)에 따른 콕스 회귀식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실업탈피 유형

〈표 4〉 분석대상의 특성

변 수	실업자 및 실업탈피자 n=665 (421:244)	실업자 및 실업탈피자-정규직 n=559 (421:138)	실업자 및 실업탈피자-비정규직 n=527 (421:106)
성 별			
남	503 (75.6%)	429 (76.6)	408 (77.4)
여	162 (24.4%)	130 (23.3)	119 (22.6)
연 령			
평 균	38.83	39.04	39.97
결혼상태			
미 혼	173 (26.1)	148 (26.6)	138 (26.2)
기 혼	454 (68.5)	379 (68.0)	357 (67.9)
이혼, 별거, 사별	36 (5.4)	30 (5.4)	31 (5.9)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8 (29.9)	161 (28.9)	170 (32.4)
고 졸	329 (49.7)	272 (48.8)	254 (48.5)
전문대학 이상	135 (20.4)	124 (22.3)	100 (19.0)
가구주여부			
예	421 (63.3)	356 (63.7)	336 (36.2)
아니오	244 (36.7)	203 (36.3)	191 (63.8)
가구원 수			
평 균(명)	3.64	3.65	3.62
65세 이상 가구원			
평 균(명)	.16	.18	.19
6세 이하 가구원			
평 균(명)	.28	.27	.24
장애인 가구원			
있 다	77 (11.6)	66 (11.8)	64 (12.2)
없 다	585 (88.4)	491 (88.2)	462 (87.8)
주관적 최저생계비			
평 균(만원)	82.80	83.15	82.09
재산규모(만원)			
1,000 미만	207 (32.3%)	169 (31.4)	170 (33.6)
1,000~5,000 미만	241 (37.7%)	197 (36.6)	187 (37.0)
5,000~1억 원 미만	117 (18.3%)	107 (19.9)	89 (17.6)
1억 원 이상	75 (11.7%)	65 (12.1)	60 (11.9)

〈표 4〉 계속

변 수	실업자 및 실업탈피자 n=665 (421:244)	실업자 및 실업탈피자-정규직 n=559 (421:138)	실업자 및 실업탈피자-비정규직 n=527 (421:106)
이전직장 월평균 소득 평균(만 원)	133.85	134.65	137.14
이전직장 직종			
관리전문직	32(4.8)	27(4.8)	27(5.1)
기술사무직	198(29.8)	176(31.5)	144(27.4)
서비스, 판매직	117(17.6)	96(17.2)	98(18.6)
기능직 및 조립직	182(27.4)	151(27.1)	146(27.8)
단순노무직	135(20.3)	108(19.4)	111(21.1)
이전직장 근무형태			
정규직	426(64.4)	365(65.8)	310(59.0)
비정규직	235(35.6)	190(34.2)	215(41.0)
이전직장 근무기간 평균(개월)	51.22	52.41	56.12
이전직장 규모			
1~29명	449(69.2)	381(69.5)	348(67.8)
30~299명	149(23.0)	123(22.4)	122(23.8)
300명 이상	51(7.9)	44(8.0)	43(8.4)
이전직장 업종			
1차 산업	6(0.9)	6(1.1)	6(1.1)
제조업	193(29.1)	151(27.1)	135(25.7)
전기, 가스 및 건설업	159(24.0)	143(25.6)	143(27.2)
운수, 창고 및 통신업	41(6.2)	38(6.8)	28(5.3)
금융 및 보험업	12(1.8)	11(2.0)	10(1.9)
서비스업	252(38.0)	209(37.5)	203(38.7)
퇴직금			
받 음(일부 포함)	141(25.6)	120(25.9)	102(23.8)
받지못함(없다 포함)	409(74.4)	344(74.1)	327(76.2)

〈표 4〉 계속

변 수	실업자 및 실업탈피자 n=665 (421:244)	실업자 및 실업탈피자-정규직 n=559 (421:138)	실업자 및 실업탈피자-비정규직 n=527 (421:106)
실업급여 받 음	43 (6.5)	39 (7.0)	31 (5.9)
받은 적이 없음	622 (93.5)	520 (93.0)	496 (94.1)
직업훈련 받 음	26 (3.9)	22 (3.9)	20 (3.8)
받은 적이 없음	639 (96.1)	537 (96.1)	507 (96.2)
공공근로 참여한 적이 있음	21 (3.2)	11 (2.0)	20 (3.8)
참여한 적이 없음	644 (96.8)	548 (98.0)	507 (96.2)
이용한 직업안정기관 수 평균(개)	.25	.26	.23
생계유지수단 : 근로소득 예	421 (63.6%)	323 (58.1)	294 (56.1)
아니오	241 (36.4%)	233 (41.9)	230 (43.9)
친척의 도움 예	72 (10.9)	63 (11.3)	65 (12.4)
아니오	590 (89.1)	493 (88.7)	459 (87.6)
저축, 재산소득, 재산처분 예	251 (37.9)	216 (38.8)	204 (38.9)
아니오	411 (62.1)	340 (61.2)	320 (61.1)
빚 예	135 (20.4)	112 (20.1)	107 (20.4)
아니오	527 (79.6)	444 (79.9)	417 (79.6)
사회적 도움 예	21 (3.2)	16 (2.9)	19 (3.6)
아니오	641 (96.8)	540 (97.1)	505 (96.4)

〈표 5〉 실업탈피 유형별 실업탈피 가능성 결정요인

독립변수	실업자 및 실업탈피자 n=665 (421:244)		실업자 및 정규직 실업탈피자 n=559 (421:138)		실업자 및 비정규직 실업탈피자 n=527 (421:106)	
	B	Exp(B)	B	Exp(B)	B	Exp(B)
남 성	-.4348	.6474	-.4506	.6373	-.7364*	.4789
연 령	-.0684***	.9339	-.0822***	.9211	-.0740***	.9287
미 혼	-.4862*	.6149	-.2805	.7554	-.4679	.6263
이혼, 사별, 별거 (기 혼)	.3807	1.4633	-.1430	.8668	.5636	1.7571
교육수준						
중졸 이하	.3052	1.3569	.2204	1.2466	.4579	1.5808
고 졸 (전문대학 이상)	.1616	1.1754	.0141	1.0142	.6678	1.9500
가구주여부	.6333*	1.8838	.6937*	2.0011	.6400	1.8965
가구원 수	-.0314	.9691	-.0561	.9454	.0375	1.0383
65세 이상 가구원	-.8432**	.4303	-.7942	.4519	-1.3878**	.2496
6세 이하 가구원	-.1227	.8845	.0365	1.0372	-.0981	.9066
장애인 가구원 유무	-.0159	.9842	-.2033	.8161	.2758	1.3175
주관적 최저생계비	.00009	1.0010	.0031	1.0031	.0013	1.0013
재산규모						
1,000미만	.4611	1.5858	.5185	1.6794	1.1165*	3.0542
1,000~5,000미만	.4592	1.5828	.5671	1.7631	1.1826*	3.2627
5,000~1억 미만 (1억이상)	.4679	1.5966	.7835*	2.1892	.1486	1.1602
이전 직장 월평균소득	-.00005	.9994	-.0018	.9982	.00007	1.0007
이전 직장 직종						
관리전문직	.3212	1.3788	-.0569	.9447	.7919	2.2075
기술사무직	-.0411	.9597	.2173	1.2428	-.7394**	.4774
서비스, 판매직	-.4652*	.6280	-.4481	.6338	-.1679	.8454
단순노무직 (기능직 및 조립직)	.3125	1.3669	.3566	1.4285	.3849	1.4695
이전 직장 근무기간	-.00005	.9994	-.0013	.9987	-.00004	.9995

〈표 5〉 계 속

독립변수	실업자 및 실업탈피자 n=665 (421:244)		실업자 및 정규직 실업탈피자 n=559 (421:138)		실업자 및 비정규직 실업탈피자 n=527 (421:106)	
	B	Exp (B)	B	Exp (B)	B	Exp (B)
이전 직장 근로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1265	1.1348	.8107*	2.2495	.5277	1.6950
이전 직장 규모 1~29인 30~299인 (300인 이상)	-.4536 -.2470	.6353 .7811	-.2375 -.0381	.7886 .9626	-.9344 -.2698	.3928 .7635
이전 직장 업종 1차산업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업)	-10.6198 .2711 -.6639* .6784* -.1637	.0000 1.3115 .5148 1.9708 .8490	-12.8292 .3241 -.2095 1.2290** .6071	.0000 1.3827 .8110 3.6655 1.8351	-11.4511 1.0883** -.8995* .1581 -11.0866	.0000 2.9691 .4068 1.1713 .0000
실업급여 T-COV*실업급여 직업훈련 T-COV*직업훈련 공공근로 T-COV*공공근로 이용한 직업안정기관 수 T-COV*이용기관 수	.3010 .039 -.6813 -.8992 .3198*	1.3512 -.6912 .5060 .4069 1.3769	.7465 -.0216 -3.4336* .4051 .3643*	1.9782 .9787 .0323 1.4994 .0323	-.1291 -1.6099 .4045 -.8032 -.0789 .1047	1.1378 .1999 1.4986 .4479 1.5815 .9241 1.1104
생계유지수단 근로소득 친척의 도움 저축, 재산소득, 재산처분 빛을 얻음 사회적 도움	2.5284*** -.4782 .0913 .4117* .2227	12.533 .6199 1.0956 1.5094 1.2495	3.2634*** -.5382 .0365 .5368* .1898	26.1380 .5838 1.0371 1.7105 1.2090	2.7047*** -.5903 -.0984 .8384** .2509	14.949 .5542 .9063 2.3127 1.2852
-2 Log Likelihood	1886.053		971.975		735.520	
Chi-Square (df = 39)	191.834***		168.615***		157.943***	

주 : *p<.05, **p<.01, ***p<.001

별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의 하위차원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들 가운데 연령은 3가지 분석모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01$)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탈피 유형을 막론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떤 일정 시점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개인이 실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과 함께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원의 수 또한 중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구내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많을수록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과 관련지어 볼 때, 65세 이상의 노인 수와 실업탈피 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번째 가능한 해석은 노인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가구의 노인부양 부담이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인부양부담이 많을수록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연령과 노인수와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조사에 응답한 가구 가운데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의 경우는 응답자의 연령이 노인가가 아닌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65세 이상의 노인수와 실업탈피 가능성과의 관계는 단순히 연령이 높으면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령' 변수와 실업탈피 가능성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부양부담이 실업탈피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가구가 현재 노인부양부담을 안고 있다면 그러한 부담은 이미 IMF 경제위기 이전에도 존재했을 것이며, 따라서 경제위기와 함께 노인부양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IMF 경제위기 이후에 노인부양부담으로 인하여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자에 비해서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연령 및 65세 이상인 노인의 수와 실업탈피 가능성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상황에서 연령이 높은 계층이 연령이 낮은 계층에 비해 실업탈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이라고 하겠다.⁹⁾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모형(1)과 (2)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수에 해당하는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정규직 실업탈피자에 비해서 전문성 및 기술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는 비정규직 실업탈피자 계층의 경우, 나이가 많은 실업자가 실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반복해서 강조하건대 이러한 발견점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가능한 해석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타당성 있는 해석인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구·사회적 특성 가운데 연령이나 노인수 이외에 가구주 여부, 결혼상태 및 성별 또한 실업탈피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경우, 분석모형(1)과 (2)에서 공통적으로 실업탈피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모형(3)에서도 유의도 수준 .1에서 실업탈피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자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주가 아니 경우에 비해서 일정시점에서 실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가구주가 실직 이전까지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구주 보다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가구주로서의 심리적 부담감 또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가구주 실업자가 비가구주 실업자에 비해서 더 불안하고 부담스런 심리상태를 갖는다는 연구결과¹⁰⁾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혼상태의 경우,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미혼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보다는 주로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혼자에 비해서 취업욕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 역시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는데, 미혼실업자들이 기혼실업자에 비해서 좋은 직장이나 예전과 보수가 비슷한 직장을 찾고자 하는 의도는 강한 반면, 어떤 일자리라도 구해야 한다는 의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¹¹⁾

9) 물론 이러한 현상은 유태균·김진옥, 1998,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탈피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 사회복지연구원》 제5권, pp. 155~179. 에서도 볼 수 있듯이 IMF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10)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1999,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pp. 91~115를 참조하기 바람.

마지막으로, 인구·사회적 특성에 해당하는 다른 변수들, 즉 성별, 교육수준, 취학 전 아동의 수 및 장애인 유무여부가 실업탈피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비록 분석결과가 분석모형(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 이전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매우 특기할 만한 결과라고 하겠다. 실업자의 교육수준이나 취학 전 아동의 수가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 또한 흥미로운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2) 경제적 특성 및 생계유지수단

전반적으로 볼 때,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주는 재산규모, 주관적 최저생계비 및 이전 직장의 월평균소득 변수들은 실업탈피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산규모의 경우는 나머지 두 변수와 달리 분석모형(2)과(3)에서 실업탈피 가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분석모형(2)과(3)을 비교해 볼 때, 모형(2)에서는 1억 원 이상의 재산규모를 가진 가구의 실업자에 비하여 5,000만 원~1억 원 미만의 재산규모를 가구의 실업자가 실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3)의 경우는 재산이 5,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실업탈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구의 실업자가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가 있는 가구의 실업자에 비해서 실업탈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실업자의 의중임금수준(*reservation wage level*)은 그렇지 못한 실업자 보다 높을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나은 직장을 찾을 때까지 실업으로부터 탈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또 한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규모가 그보다 낮아질 때 실업탈피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p < .05$) 높아지는 반면, 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는 재산규모 1억 원을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1999).

기준으로 실업탈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실업자의 의중임금수준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의중임금수준에 변화(구직활동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주관적 의중임금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는 재산규모 분기점(threshold)이 정규직 실업탈피자와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인 이전 직장의 월평균소득의 회귀계수 추정결과에 의하면 3가지 분석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개인 및 가구의 경제수준과 실업탈피 가능성간의 상충적 관계를 짐작하게 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생계유지수단 관련 변수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가구의 주된 생계유지수단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일정 시점에서 실업탈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마찬가지로 생계유지수단에 저축, 재산소득 같은 금융소득 및 재산처분이 포함되는 경우 또한 실업탈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가지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생계유지수단 가운데 금융소득보다 근로소득의 비중이 큰 가구의 실업자가 실업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금융소득보다 근로소득의 비중이 더 큰 가구일수록 가구의 경제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소득에 더 의존적인 가구일수록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구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생계유지수단으로서 빚을 얻는 경우와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이다. <표 5>에 따르면 생계유지수단으로서 빚을 얻는 것은 모든 분석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실업탈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 또한 높았다($p < .05$).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

12) 예를 들어, <표 5>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 실업탈피자와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의 의중임금수준은 재산규모가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5>의 분석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만 친척으로부터의 도움은 실업탈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얻는 것과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공통적으로 생계유지를 외적 자원에 의존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업탈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빚을 얻는 경우가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얻은 경우에 비해 어떤 이유에서든 실업자로 하여금 실업탈피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마도 빚을 얻는 경우,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혹은 빚을 얻는데서 오는 수치심 등이 강한 구직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반면,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소득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소득이전으로 인해 나타난 일종의 의존심이 구직동기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종교단체나 이웃으로부터의 도움을 말하는 사회적 도움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를 통해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적 도움의 경우 또한 빚을 얻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업탈피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도움 역시 수혜자로 하여금 부담감 또는 수치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실업자로 하여금 강한 실업탈피 동기를 갖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과 달리 빚을 얻거나 사회적 도움을 받는 것이 단순히 실업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감소시킴으로서 실업자로 하여금 실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빛이나 사회적 도움이 실업탈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외적 지원과 달리 친척의 도움이라는 변수만이 실업탈피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3) 이전 직장 관련특성

이전 직장과 관련된 특성들 가운데 이전 직장의 직종과 업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실업 이전에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전에 1차 산업이나 전기, 가스 및 건설업에 종사했던 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거에 제조업이나 운수, 창고 및 통신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탈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실업탈피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악화된 고용상황하에서 실업 이전에 종사했던 업종별로 실업탈피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 직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기 때문에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렵다고 하겠으나, 정규직 실업탈피자와 비정규직 실업탈피자간에 직종과 실업탈피 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는 이전에 생산직으로 근무했던 실업자에 비해 관리전문직이나 서비스 판매직은 실업탈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기술사무직이나 단순노무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 서비스판매직은 정규직 실업탈피자와 마찬가지로 생산직에 비해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으나, 기술사무직은 상대적 실업탈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전 직장의 직종과 업종의 경우, 분석결과에서 어떤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었으며, 이는 아마도 직종과 업종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업종이나 직종으로의 전환이 더 어렵다는 것과, 근무기간이 길수록 실업자의 연령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 직장의 규모에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을 비교기준으로 볼 때,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직장에서 일했던 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정부의 실업대책

분석모형(1)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여부의 시간의존성을 배제할 경우, 실업급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실업탈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탈피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실업급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규직 실업탈피자에 해당하는 분석모형(2)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실업탈피 가능성을 높인 반면, 비정규직 실

업탈피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석모형(3)에서는 오히려 실업탈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다 심층적이고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만 근거해 볼 때,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실업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실업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형태로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는 정규직 실업자에 비해서 실업급여가 실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실업자들로 하여금 실업탈피 의욕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실업급여에 의존적이 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직업훈련 참여여부는 실업급여와 대조적으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는 직업훈련과 실업탈피 가능성간의 상충적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p < .05$)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적자본의 질(*quality*)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즉, 직업훈련에 참여했을 때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구직활동 가운데 직업훈련이 다른 구직활동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표 4>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직업훈련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실업탈피 가능성을 저하시킨다기 보다는 직업훈련이 다른 구직활동에 비해 기회비용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훈련과 실업탈피 가능성간의 상충적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p < .05$) 것을 볼 때, 직업훈련의 기회비용은 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규직 실업탈피자가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에 비해 전문성, 기술수준 및 숙련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아마도 직업훈련은 전문성, 기술수준 또는 기술숙련도가 높은 실업자들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한 구직방법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표 5>의 결과에

의하면 실업탈피 유형을 막론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실업탈피 가능성과 역(逆)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다른 구직방법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기회비용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공공근로사업의 현실적인 정책목표는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대량실업 상황하에서 실업자들의 생계유지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시 더 많은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할수록 실업탈피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러나 고용유형을 분리할 경우, 비정규직 실업탈피자는 많은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실업탈피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것이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결과이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유형별로 실업대책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는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 이 연구에서 살펴본 정부의 실업대책 4가지 가운데 어떤 대책도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¹³⁾,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현재와 같은 대량실업 상황하에서도 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는 어떤 실업대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와 개인적으로 얼마나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실업탈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은 대량실업 상황하에서는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개인의 구직활동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결과는 악화된 고용상황으로부터 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에 있어서 정규직 실업탈피자와 비정규직 실업탈피자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3) 분석결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중요시하는 경우, 분석모형(3)의 경우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대책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 연구에서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상황에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으며, 특히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분석결과와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대책이 실업탈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어떤 실업대책도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에는 실업탈피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이 오히려 실업탈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는 직업훈련에 참여했을 때 실업탈피 가능성이 낮아지고 다양한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이용했을 때 실업탈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정부의 실업대책의 효과가 정규직 실업탈피자와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규직 실업탈피자는 어떤 실업대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서 실업탈피 가능성이 변할 수 있는 반면,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실업대책이 실업탈피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적절성(adequacy)이 결여된 실업대책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실업자들을 실업대책의 혜택에 의존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직 실업탈피자의 경우 모든 실업대책이 실업탈피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실업자의 재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업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실업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실업탈피 유형을 막론하고 실업탈피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훈련 그 자체가 실업탈피 가능성을 저하시킨다기 보다는 직업훈련이 다른 구직활동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참여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너무 높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업탈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재산규모와 실업탈피 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구의 실업자가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가 있는 가구의 실업자에 비해서 의중임금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실업탈피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또한 정규직 실업탈피자와 비정규직 실업탈피자를 비교해 볼 때, 재산규모뿐만 아니라 정규직 실업탈피자와 비정규직 실업탈피자를 구분짓는 인구, 사회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 의증임금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업자의 특성을 세분화시키고 세분화된 특성별 의증임금수준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점진적으로나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시장정책에서 소득보장으로 현실적 기능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실업대책을 통해서 소득보장과 근로의욕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¹⁴⁾

셋째,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 가운데 실업자의 연령과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실업탈피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실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탈피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고연령층에 속하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제 및 산업구조가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재교육하고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고연령층 실업자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거나 별도의 소득 및 생계유지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얻어진 분석결과를 경제위기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선행연구들에서 실업탈피 가능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독립변수들 대부분이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지닌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대량실업 상황하에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은 대량실업 이전에 실업탈피 가능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으며—적어도 이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는다—따라서 실업자의 특성이나 실업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 통제 가능한(*controllable*) 특성이

14) IMF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그 현실적인 기능이 소득보장으로 전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안학순, 1998,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소득보장기능 강화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5권, pp. 125~154를 참조하기 바람.

나 상황을 변화시켜 실업탈피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이러한 연구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 발생한 실업은 경제위기 이전의 실업과 그 규모와 성격이 매우 다르며 따라서 실업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기존의 접근방식과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대량실업 상황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실제로 실업탈피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만일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시적인 경제상황이 변화됨으로써 고용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실업자와 실업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더 중점을 둔 보다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진욱. 1998.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탈피에 관한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안학순. 1998.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소득보장기능 강화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5권. pp. 125~154.
 유태균·김진욱. 1998.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탈피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5권. pp. 155~179.
 허명희·박미라. 1994. 《SAS와 NCSS를 이용한 생존분석》 서울 : 자유아카데미. pp. 5/1~6/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1999. 《1998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Atkinson, Anthony B. & Micklewright, John. 1991.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 pp. 1679~1727
 Belzil, C. 1995.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over Time : An Analysis with Event History Dat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7. pp. 113~126.

15) 경제위기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실업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을 찾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요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했다.

- Blau, David M. 1992. "An Empirical Analysis of Employed and Unemployed Job Search Behavi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45. pp.739~752.
- Bugress, Paul L. & Low, Stuart A. 1992. "Preunemployment Job Search and Advance Job Loss Noti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 pp.258~287.
- _____. 1998. "How do Unemployment Insurance and Recall Expectation Affect On-The-Job Search Among Workers who Receive Advance Notice of Layof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51. pp.241~252.
- Carling, K., Edin, P., Harkman, A. & Holmlund, B. 1996. "Unemployment Duration, Unemployment Benefit, and Labor Market Programs in Swede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9. pp.313~334.
- Classen, Kathleen P. 1977. "The Effect of Unemployment Insurance on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Subsequent Earning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30. pp.438~444.
- Corak, M. 1993. "Is Unemployment Insurance Addictive? Evidence from the Benefit Duration of Repeat Us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47. pp.62~71.
- Ehrenberg, Ronald G. & Oaxaca, Ronald L. 1976. "Unemployment Insurance,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Subsequent Wage Gain." *The American Economics Review*, 66. pp.753~766.
- Felderstein, M. 1976. "Temporary Layoffs in the Theory of Un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pp.937~967.
- Holen, A. 1977.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Entitlement on Duration and Job Search Outcom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30. pp.445~450
- Jones, Stephen R. G.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Spells and Reservation Wages As a Test of Search Theo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 pp.741~765.
- Kats, Lawrence F. and Mayer, Bruce D. 1990. "The Impact of The Political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1. pp.45~72
- Korpi, T. 1995. "Effects of Manpower Policies on Duration Dependence in Re-employment Rates : The Example of Sweden." *Economica*, 62. pp.353~371.
- Levine, Phillip B. 1993. "Spillover Effects Between the Insured and Uninsured Unemployed."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47. pp.73~86
- McCall, Brian P. 1997. "The Determinant of Full-Time versus Part-Time Reemployment following Job Displac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pp.715~734.

- Meyer, Bruce D. 1990.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Spells." *Econometrica*. 58. pp.757~782.
- Ruiz-Quintanilla, S. Antonio & Claes, R. 1996. "Determinants of Unemployment of Young Adults : A Multi-Country Stud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49. pp.424~438.
- Wadsworth, J. 1991. "Unemployment Benefits and Search Effort in the UK Labour Market." *Economica*. 58. pp.17~34.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 Empirical Approach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Yoo, Tae-Kyun (Soong Sil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after the crash of Korea's economy in 1997.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unemployment programs on reemployment of the program beneficiaries. Using the data from the 1998 Survey on Unemployment Condition and Welfare Needs, co-dire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Institute of Labor Policy, a Cox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study results suggested that, in general, the government unemployment programs did not have noticeable effects on reemployment of the beneficiaries. The study, however,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programs varied, depending on the mode of unemployment-exit, that is, full-time versus part-time reemployment. In addition, the effects of such factors on reemployment a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unemploye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ith unemployed family members, and previous job characteristics are also examin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unemployment programs.